

대학평의회 2019년 결산회계 자문 의결서

발신: 웅지세무대학교 대학평의회 의장 도성자

수신: 학교법인 웅지학원 이사장(직무대행)

요청문

웅지세무대학교 대학평의회는 2020년 5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 4차 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제 31조 ③항 1에 의거, 2019년도 웅지세무대학교교비회계 결산을 다음과 같이 자문하기로 의결하였으니, 이사회에서 심의·의결 시에 다음 자문내용을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.

자문내용

- 2018년도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처분 내용 중 교비회계 회수 조치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.
 - 설립자 및 총장 교비회계 횡령 등 부당 2,421,465,004원
 - 미 징수한 임대료 10,556천원
 - 웅지생활관관리 관리 비용 교비회계 집행 269,788천원
웅지생활관관리 대여금 1,378백만원
 - 법인 부당 비용 교비회계 집행 (소송비용)7,700천원
 - 이사회 회의비 집행 부적정 2,136천원
 -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30,204,596원
 - 설립자 법인카드 및 학교 시설 부당사용 31,401,892원

배석했던 사무처장으로부터 이행된 것과 소송중인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모든 사항을 기록했습니다.

-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받아야 하는 임대료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, 법정 부담금도 교비로 부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.
- 웅지생활관 주식회사 SPC에 지불하는 리스임차료 7억원에 대해 교육부는 금액 적정성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.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의실 임차료를 동일하게 지불하는 것이 적절한 지 검토해주시십시오.
- 비등록금 회계 중 (주) WAT와 대표 송상엽의 미수금이 회수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십시오.

신입생이 급감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독기관의 교비 회수 명령이 조속히 이행되고, 더불어 여러 해 동안 지속되어온 미수금 등은 조속히 회수 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합니다.